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09-159호
- 예고기간 : 2009. 10. 7 ~ 27
- 담당부처 : 국고과(02-2150-5114)
- 전문참고 : 기획재정부(www.mosf.go.kr)

◎ 개정이유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이행 담보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시공평가결과, 부실 벌점등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심사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정하도록 자율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부실벌점, 시공평가 결과와 같은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1790호
- 공포일자 : 2009. 10. 19
- 담당부처 : 주택건설공급과(02-2110-6228, 8229)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단지 지하층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제한을 완화하여 복합건축물의 경우 변전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내용안내

- 법 률 : 제9796호
- 공포일자 : 2009. 10. 9
- 담당부처 : 안전보건정책과(02-6922-0923)
- 전문참고 : 노동부(www.molab.go.kr)

◎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중전 자체검사만을 수행하여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계·기구등에 대해서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자율검사의 전면 시행에 따른 부실검사의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건설한 민간 지정검사기관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금번 개정법률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이 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두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7조 삭제 및 안 제8조)

나. 중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번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내용안내

- 법 률 : 제9795호
- 공포일자 : 2009. 10. 9
- 담당부처 : 고용서비스혁신단(02-2110-7141)
- 전문참고 : 노동부(www.molab.go.kr)

◎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새롭게 민간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직업소개에 따른 요금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數)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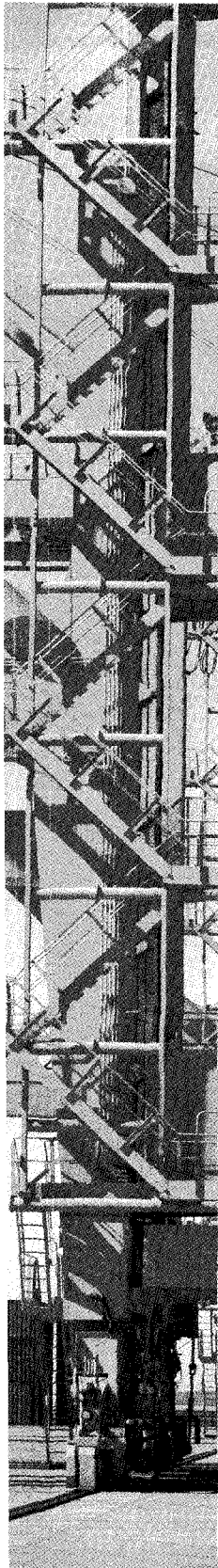
◎ 주요내용

가. 새로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 확대(안 제2조의2제2호 및 제32조)

-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업소개의 개념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법에서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 2)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는 것도 포함되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응모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응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직업안정 관련 규제사항의 법률상 근거 보완(안 제19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안 제33조제6항)

- 1) 법률로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등을 포괄적인 법률의 위임 또는 재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온 문제점이 있음
- 2)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국외 공급 근로자의 관리,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구인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요금 제한 완화(안 제19조제3항)

-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헤드헌팅 업체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문화·대형화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하고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보완·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고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완화(안 제22조제2항)

-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직업소개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의2)

-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재등록을 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5년간 재등록·재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음
- 2) 사업자가 등록·허가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그 처분 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재등록을 하거나 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현행 제48조제3호·제3호의2·제4호 및 제48조의2 삭제, 안 제50조제1항 신설)

- 1) 현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제재가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2) 위 행정형벌 등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일도록 함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정부) 사례

이

1. 전기감리용역 비상주 감리원 배치건수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59호로 적격식사 기준에 따르면 비상주감리원 배치건수가 5개까지(당첨되는 것을 포함 6개) 만점처리토록 되어있는데, 지자체에서 감리원 모집공고 시 임의로 비상주감리원 배치건수를 3개까지 배치된 경우 만점을 주도록 업무 중점도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비상주 감리원 배치건수가 공고일 기준 5건이지만 지정 예정현장의 감리원배치계획 이전에 상기 5건 중 2건이 배치완료 된 경우 비상주감리원의 배치건수를 3건으로 볼 수 있는지

- PQ고시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점도는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차등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도지사는 PQ고시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당해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의 해석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가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점도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여 모집공고시 제시한 경우라면 당해 공고 내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4. 24)

02

- 공사 진행 중 감리사측에서는 관급자재(사급자재 일부포함)에 대하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공정의 3분의2 이상이 진행된 지금의 상황에서 관급자재(사급자재 일부포함)에 대하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질의
- 관급자재 부분이 용역대가 산출 내역서에는 빠져 있지만, 발주서상의 감리용역과업지시서에는 본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작성하여 발주하였고, 본 공사 시방서에도 감리가 업무를 수행토록 작성되었고, 감리사측의 착수신고서의 감리업무수행계획서에도 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항은 전혀 없으며, 우리 청에서는 당연히 관급자재(사급자재 일부포함)도 감리용역 업무에 해당된다고 감리사 및 책임감리원에게 설명을 하였으나 전혀 통하지를 않음
- 과연 우리 청의 의견대로 관급자재 부분이 감리업무에 해당되는지, 감리사 및 책임감리원의 주장대로 감리업무의 범위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검토 후 화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1호에서 공사비는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으로 지급(관급)자재와 사급(지입)자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재의 규격 검토·확인 등을 감리원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나,
- 해당 공사 발주서 상의 감리용역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에 자재부문에 대한 감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공사감리가 3분의 2 이상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4. 18)

03

전기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모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로 인한 감리용역 중지를 통보받았습니다.

- 1 문서상 공사중지 일자 : 2008. 4. 22
- 2 문서결재권자결재일 : 2008. 4. 25
- 3 구청에서 우리회사 통보일 : 2008. 4. 28일때

질문: 감리용역의 중지는 몇일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 전력기술관리법령에서는 공사중지로 인한 감리용역 중지일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청 통보 문서상의 공사중지일자(2008.4.2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4. 29)

04

지형과 암반과 모래가 많아 조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지 못하고 있고, 인접지역이 협소하여 접지봉을 여러 개 시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시공사례나 유사한 해결책에 대하여 접수된 바가 있는지 여부?

- 소정의 접지저항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접지공사는 심타접지공법, 가공지선으로 접지저항이 양호한 곳에 접속 또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접지저항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시공사례나 유사한 해결책에 대하여는 가로등 접지의 경우 각 등주마다 접지를 하고 그 접지를 모두 연결시켜 접지저항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제279조에 의한 IEC 60364에 의해서 시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접지시공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 접지시공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4. 28)

생활속 법령상식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는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는 의무이행명령, 과태료 및 감치처분 등에 의한 간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받을 수 있다.



글 _ 박종복 변호사

Q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중이다. 슬하에 2살된 딸아이가 있다. 본인은 딸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유아인도를 원한다. 딸아이는 현재 남편측이 데리고 있다. 판결에 승소하여도 딸아이를 데려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대책은?

A 이혼 소장을 내면서 유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실제로 유아를 인도하라는 재판을 한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예규에는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동산의 경우와 달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그가 반항하면 집행관으로서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유아의 행동을 속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집행불능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는 이러한 경우, 즉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귀하의 경우는 남편)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에는 당사자(남편) 또는 관련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간접강제 방법을 이용하여 유아를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를 인도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간접강제 방법을 행사하는 것은 유아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쉬우므로, 사전에 당사자(남편)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